

2017년도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17. 11.

감사위원회

1.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고대상

- 기 간 : 2017. 7. 1. ~ 9. 30.(2017년 3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원순씨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

□ 접수결과

- 2017년 3분기 총 155건 접수

[표 1] 2017년 3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 (단위: 건)

접 수 창 구	합 계	7월	8월	9월
공 익 신 고	40	14	18	8
공직자비리신고	113	33	51	29
부 정 청 탁	2	1	-	1
퇴직공무원특혜	-	-	-	-
합 계	155	48	69	38

※ 전 분기(2017년 2분기) 접수 건수 159건에 비해 2.5% 감소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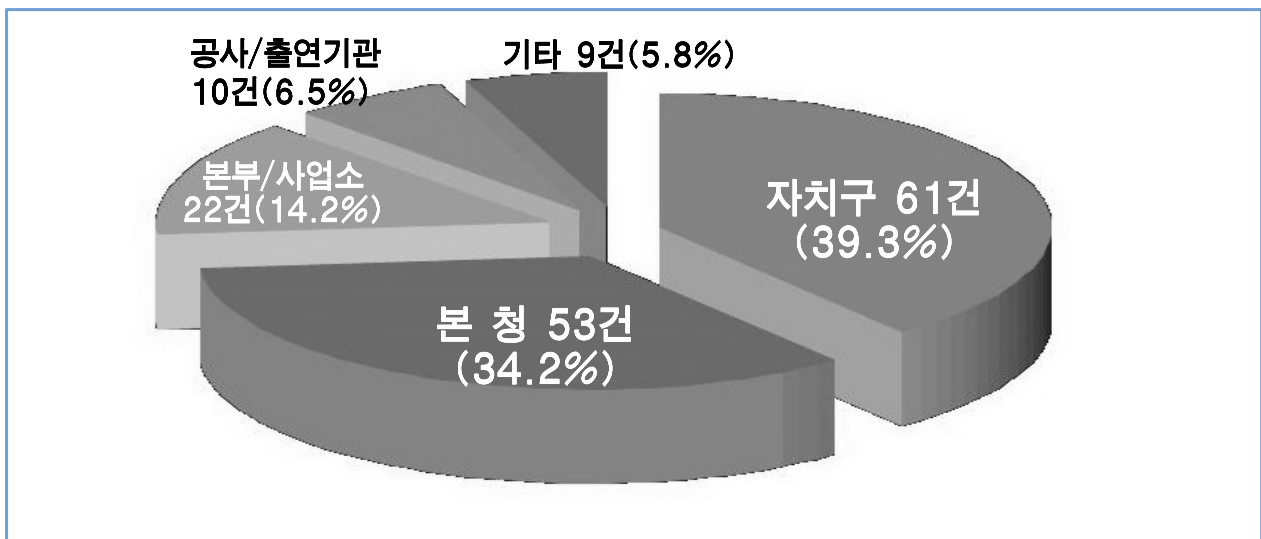
(단위: 건)

경로	합 계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기 타 응답소/우편/방문/팩스
접수건수	155	131	14	10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61건(39.3%)으로 가장 많았음
 - 식품위생법/사회복지사업법/건축법 등 공익신고 18건
 - 복무, 업무부적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43건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53건(34.2%), 본부/사업소 소관 22건(14.2%)
 - 본청의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39건 등 접수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6건, 공직자비리신고 16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0건(6.5%), 기타 9건(5.8%)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 공직자비리신고 9건
 - 기타 9건은 타 지자체,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기관 소관사무



3. 제보자 유형 분석

□ 내부제보자 유형 분석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신고자에 해당하는 제보는 26건(16.8%)로 추정

[표 3] 내부신고자 유형분석 결과(추정) (단위 건)

유형	총계	(전/현)근무자 법 제2조 제7호 가목	계약 업무 수행자 법 제2조 제7호 나목	관리·감독을 받는자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건 수	26	16	9	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규정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법 제2조 제7호 가목)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법 제2조 제7호 나목)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6.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4. 제보내용 유형 분석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155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01건

[표 4]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101건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	
155 (100%)	64 (41.3%)	35 (22.6%)	2 (1.3%)	54 (34.8%)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분	개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79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

○ 부패신고 해당 64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조치 상황	내 용
금수 품수	자 치 구	1	조사중1	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 대상
	소 계	1		
불공정 계약 징정	본 청	1	해당없음1	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
	자 치 구	3	조치1, 해당없음2	
	본부/사업소	5	조사중2, 해당없음1, 중복종결2	
	공사 / 출 연	1	해당없음1	
	소 계	10		
복관 무련	본 청	2	취하2	허위출장/근태/ 성희롱 등 공무원 복무관련
	자 치 구	4	개선1, 조사중2, 해당없음	
	사 업 소	2	조사중1, 증거불충분1	
	공사 / 출 연	2	조사중2	
	소 계	10		
인관 사련	자 치 구	1	취하1	기관의 부적정 인사 등
	소 계	1		
업무 적 무정	본 청	8	조사중4, 해당없음4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숙/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건(업무소홀 혹은 업무 부당행위)
	자 치 구	11	조치1, 개선3, 조사중2, 증거불충분1, 해당없음4	
	본부/사업소	8	개선1, 조사중3, 해당없음3, 중복종결1	
	공사 / 출 연	4	조치2, 조사중2	
	소 계	31		
품위 위반	본 청	4	증거불충분1, 해당없음3	영리행위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본부/사업소	4	개선1, 증거불충분2, 해당없음1	
	공사 / 출 연	1	조사중1	
	기 타	2	권한없음2	
	소 계	11		
총	계	64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공익신고 해당 35건 세부 내용

[표 6]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건)

구 분	건수	소관기관	조치 상황	내 용
건 축 법	13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해당없음2, 중복종결8, 취하1	미신고·허가 불법 건축물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2	자 치 구	해당없음1, 중복종결1	불법 성토 등 무허가 개발
도 로 교 통 법	1	자 치 구	개선1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시 차량 파손 등
사회복지사업법	5	자 치 구	조치1, 조사중2, 취하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식 품 위 생 법	2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업소 위생상태 불량 등
장 애 인 복 지 법	3	자 치 구	조사중2, 중복종결1	장애인복지시설 기준 미달 등
주 택 법	2	자 치 구	개선1, 조사중1	공동주택 동의요건 결격 등
하 수 도 법	7	자 치 구	증거불충분1, 해당없음1, 중복종결5	정화조 등 위법 설치 및 오물 무단방류 등
총 계	35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부정청탁신고 2건 - 조사 중

5. 처리 결과

공익제보 처리 내역 ('17.11. 3. 기준)

[표 7] 공익제보 처리 현황

(단위 건)

총계	처분 및 개선 23		종결 88				조사중	취하
	처분(조치)	개선 등	해당 없음	증거 불충분	중복 종결	권한 없음		
155	5	18	48	6	28	6	34	10

※ 개선 등 내역 : 구두경고, 주의촉구,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처분(조치)사항 5건 처리내역

[표 8] 공익제보 조치(요구) 결과

(단위 건)

번호	신고 내용	소관 기관	조치 내역
1	허위로 폐기물 수거 완료 통보	자치구	주의1
2	입찰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	자치구	경징계요구3
3	어린이집 수당편취, 서류미비	자치구	개선명령2, 시정명령1
4	센터 내 근태 관리 소홀	투자출연기관 *조사담당관 직접조사	통보1
5	사업 안내 부실 및 서비스 불만 등	투자출연기관	통보2